

외국의 미성년자 근로실태

신 익 현*

- I. 논의의 필요성 및 목적
- II. 주요국가에서의 미성년자 근로실태
- III. 미성년자 근로문제의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 IV. 맺는말

미성년자 근로문제는 현재 우리가 급박하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의식과 경제성장의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미성년의 나이로 생계보조를 위해 취업하고 있는 청소년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였었고, 앞으로는 외국인 고용이 확대되고 또 외국과의 교역이 계속 증대됨에 따라 미성년자 고용과 관련한 국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미성년자 취업 및 고용문제에 있어 국제적 감각을 키워 나간다는 취지에서 몇몇 나라들에 있어서의 미성년자 근로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기 위하여 강구되고 있는 방안들을 정리해 본다.

I. 논의의 필요성 및 목적

값싸고 양순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고용은 산업 발전수준과 관련 없이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미성년 노동력을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들을 고용하는 현상은 가난한 나라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 근로문제를 보는 시각이 문화나 사회발전 정도에 따라 약간 다를 뿐이지, 미성년자들을 열악한 작업조건으로 고용하여 노예처럼 부리는 것은 산업발전을 이룩하여 국부를 축적하고 있는 나라들 안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미성년자 고용문제가 사회윤리적 문제중의 하나로 심심찮게 거론되며, 일찌기 산업혁명의 불을 당겼던 영국에서도 산업발전과정에서 미성년자 근로를 용인하고 활용해 온 바 있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 고용은 그 내용이 각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공업국가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자연적인 다원주의적 현상으로 당연시해 온 면도 없지 않다.

미성년자 근로가 보편적으로 성행하게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후진국들이 표방하고 있는 경제발전 일변도의 국가정책이 저렴하고 불평등한 노동인력을 최대한 확보·활용한다는 미명 아래 의도적으로 미성년자 고용을 눈감아 주고 있어 미성년자 근로가 성행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정치적 후원을 심분 활용하여 불법적이며 비인간적인 근로상황을 정당화시키고, 미성년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둘째로 미성년자들이 궁핍한 가정형편을 돕는다는 절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가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는 데서 미성년자 근로가 성행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성년 근로자들은 어떠한 근로조건도 감수하며 자신들을 희생하게 된다.

미성년자 근로는 동기 및 정황을 들어 정당시하려 하거나 또 여러가지 명분을 들어 합리화하려 해도 그러한 노력들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노동력으로 고용하는 것은 인간능력을 활용하기 이전에 보호되어야 할 아동기를 박탈하는 비인간적인 처사로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한다. 무엇보다도 미성년자 고용은 앞으로 긴 인생살이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연약한 아동들에게 강제로 또는 선택의 여지없이 경제적으로 억눌린 상황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적 필요에 짓눌려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힘든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강요된 자발성이다. 다른 한편, 자발적으로 취업한 경우에도 완성된 기술인 또는

직장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생략하거나 게을리한 채 직접 생업에 뛰어들다는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나 더 나아가 사회적인 면에서 볼 때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고 보다는 근로자로서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일이다.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질적으로 수준높고 대우받는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준비기간이 더욱 많이 요구되고 자기능력을 개발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업을 경영하기 위한 목적에서든 또는 궁핍한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든 이러한 준비나 노력이 없이 직접 근로현장에 뛰어 든다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자기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미성년자 근로가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빈곤과 역경의 악순환이 크게 개선의 여지가 없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성년자 근로문제가 명확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표면화되고 공식적인 정보나 자료들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성년자 근로가 어두운 장막 안에서 때로는 범법의 지경을 넘어서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계에 걸쳐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여러 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미성년자 근로문제는 누구에게도 전혀 생소한 것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일이 전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도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설사 그러한 고용 또는 근로관행을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서었다 하더라도 같은 질의 삶을 살기 위해 함께 애써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상을 남의 일로만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게 됨에 따라 한 나라 안에서의 미성년자 근로문제는 비단 그 나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감각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공통의 문제

로 부각되고 있다. 누구든지 입고 있는 스웨터가 거의 노예생활과 다름없는 작업환경 아래 일하고 있는 미성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스웨터의 따스함보다 그 속에 배어 있는 근로자들의 끈끈한 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터하여 이 글에서는 국가경제 발전이나 빈한한 가계를 도울 목적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최악의 비인간적인 형태로 악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적 교훈들을 모아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적 교훈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교훈들이 던져주는 의미를 검토해 본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선진 산업국가라고 생각되는 미국에서의 미성년자 근로실태를 살펴 보고, 가난·정치적 이유·경제발전이라는 국가 지상명제의 달성을 이유로 들어 미성년자들의 근로를 묵인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인도, 필리핀, 타일랜드 등에서의 미성년자 근로상황을 살펴 본다. 이어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근로문제에 대하여 제안되고 있는 해결방안들을 정리해 본다.

II. 주요국가에서의 미성년자 근로실태

1. 미국의 미성년자 근로

미국에서의 미성년자들의 근로실상은 1900년 대초부터 대중에게 인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자료들을 보면, 1900년대의 미성년자들의 작업광경을 담고 있다. 1908년에 찍은 한 사진은 인디애나주의 한 유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년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1909년에 조지아주 어거스트시에 있

는 글로브 목화공장의 실뿔는 기계 옆에서 허름한 작업복장으로 서 있는 소녀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과, 메이콘시 소재 섬유공장의 실뿔는 기계에 매달려 일하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소개되고 있다. 이 사진들은 급세기 초에 미성년자 근로가 미국내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1938년에 통과된 근로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연방법의 통제를 받는 위험한 일에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14세 내지 15세의 미성년자가 한정된 시간 동안 배우로서의 공연·신문배달·부모의 사업체 내에서 위험하지 않고 쉬운 일은 할 수 있으나, 제조업이나 광업분야의 힘든 공정중심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12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대규모 농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위법으로 되어 있다. 시대변천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취업기회를 개방해 주기 위해 간이식당 종업원들이나 농장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및 최저근로연령 제한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1982년에 레이건 행정부는 14세 내지 15세 미성년자에게 한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국회에서 비준을 얻지 못했다. 또 노동성은 12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이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조항을 연방법 속에 삽입하고, 법원도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으로부터의 위험이 없으면 미성년자들이 농장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허가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미성년자근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장근로자중에는 나이 어린 미성년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텍사스지역의 양파농장에서 농장

노동자인 양친을 도와 일을 하고 있는 미성년자들 중에는 5세의 어린아이도 있다고 한다. 비가 축축히 내려 기온이 차고 양파냄새가 매캐하게 코를 찌르는 작업 환경 속에서 유치원에 있어야 할 어린아이의 노동이 목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작업환경 속에서 미성년자들이 일하게 되는 이유는 작업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양파 저장용기에 수확된 양파들을 주어담는 단순 작업을 나이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플로리다주의 굴농장과 조지아주·뉴욕주·워싱턴주의 야채농장 등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5세 아동이 농장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미성년자 근로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교육적인 견지에서 볼 때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 활동에 임해야 할 어린아이가 수업활동 대신 농장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 상황과 잘못된 “양파수확은 4주 내지 6주 이내에 끝나게 되고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갖는 것도 아니므로 2, 3일 학교를 빠지고 집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학교다니는 것만큼 필요하다”는 부모들의 생각에서 연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규정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문제시되어야 할 것은 법정연령 이하의 미성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과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986년에 실시된 미 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미성년자 고용문제로 적발된 12,662건 중 75%가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을 고용했기 때문이었다. 콜로라도주의 그랜드정션시에 주재하고 있는 연방정부 노동감독관의 보고에 의하면 고용되어 있는 미성년자들 중에는 9세의 어린아이도 있었다. 같은 해 조지아주에서는 2,465개의 작업장중에서 48%에 해당하는 작업장

들이 불법으로 미성년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그 중 111개 사업주가 12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또한 418건이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미성년자들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기계류를 사용하다가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마사추세츠주에서는 연평균 6,000건 이상의 산업재해가 17세 미만의 근로자들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198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노동성 산업재해 기록에 따르면, 14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건수가 1,508건이나 되는데 대부분이 불법작업중이었다. 1986년에 조지아주에서 적발된 2,465개의 작업장중 266개소의 사업장에서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일을 맡기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는 미성년자들이 작업장에 대한 경험이 없고 수행하는 작업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었다.

미성년자들이 가두판매·신문배달 등 소규모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어 연방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미성년자 보호의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가두판매 또는 호별 방문판매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밤늦게 늦선 집을 방문케 되어 예기치 않은 위험을 불러 올 수도 있고 범죄와 교통사고에의 노출 가능성이 아주 높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시에서 Mercury News를 배달하는 사람들 세 명중 한 사람이 최소한 한 건의 무서운 순간을 신문배달 중에 맞은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1983년에 아이오와주에서는 Des Moines Register 신문을 배달하던 두 소년이 실종되었는데 현재까지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다.

2. 인도에서의 미성년자 근로

인도에서는 1950년 입법된 근로법이 14세 이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1948년에 제정된 공장법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적정한 근로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가난·부모의 무지와 무기력·사업주의 근로자 우대의식 결여·정부의 부패·산업화로의 강한 의지 때문에, 미성년자 고용이 불법이지만 가장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부모·미성년자·사업주·정부와 사회 모두가 빈곤극복을 위하여 또 경제부강이라는 국가목표를 두고 서로 혼돈상태에 빠져 있어 미성년자 근로를 극히 당연스럽게 받아 들이고 있다.

그 결과로 해서인지 인도에서는 5세에서 15세 사이의 미성년자들 다섯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도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5세에서 15세 사이의 미성년 근로자수는 적게는 1천8백만명에서 많게는 4천4백만명이나 된다. 부모와 더불어 단편적인 일에 종사하고 부모이름으로 임금도 지불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미성년 근로자들의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2천만명이 간헐적으로 일하고 있거나 일하는 부모대신 집을 보기 위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박한 경제적 요구에 근거하여 묵인되고 있는 미성년자 근로에 대하여 제공되는 임금은 그러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모자라는 것이다. 한 유리공장에서는 숙련공이 일당 150루피를 받는 반면, 미성년 근로자들은 그 의 1/100에도 못미치는 11루피를 받고 있다. 이것을 미화로 환산해보면 최저 하루임금인 1.25불보다 훨씬 적은 86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직조업의 경우 일당 24~40센트를 받는데, 그나

마 견습의 경우에는 5년동안 부실하게 제공되는 식사로 메꾸어지기도 한다.

값싼 임금외에도 미성년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은 노예의 상황을 방불케 한다. 인도 노동부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1984년에 구출된 114명의 행방불명자 중 91명이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였는데 그들은 하루 16시간 내지 17시간의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양탄자 직조의 경우 15만명 정도의 미성년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세 명중 두 명은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부실한 조명과 실밥이 공중에 떠서 날아 다니는 탁한 공기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 “bidi농장”이라고 불리는 담배공장에서는 새벽 3시나 4시경에 버스로 아이들을 마을로부터 싣고와 하루 12시간의 일을 시키고 있었다. 탄광에서는 미성년 근로자가 못매를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고, 성냥공장과 폭죽제조 공장에서는 근로자가 폐병에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인도는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가장 잘 합리화되어 있는 나라이다. Firozabad의 한 유리공장에서는 방폐막이나 보호막이 없이 화씨 1500도의 뜨거운 유리원료가 담겨 있는 용광로가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작업자 어느 누구도 재해방지용 안경이나 신 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이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말해 주는 예가 곳곳에 나타나 있다. 귀에 붕대를 감고 있거나, 초점없는 안구에 상처투성이의 눈을 하고 있거나, 머리털이 타 없어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소년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이러한 작업환경을 자신들의 인생의 실체로 수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다치고 무섭고 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또

실사 무섭다 하더라도 이 일을 그만 둘 수는 없다”는 작업장 현실과 미성년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가난이 극복될 때까지는 미성년자들의 노동이 결코 종식되지 않으리라는 애처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미성년자 근로상황이 노예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정부의 부패를 들 수 있다. 사업주들은 미성년자들의 근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뇌물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의 유리공장에서도 공장감독관·세무관리자·노동운동가 등 모든 관련자들이 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요구하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를 강력하게 옹정하며 근로법과 공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강조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감독체제를 정부는 가지지 못하고 있다. 1948년과 1950년에 입법화된 근로법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간디수상 정부가 새로운 미성년자근로법을 통과시키고 작업시간을 준수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나 결과는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법원과 지방관서의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지방유지인 사업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이나 행정처리를 여전히 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을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막지 못하고 눈감아 주는 정부의 행정감독력이 문제인 것이다. 반대로 사업체의 사업규모를 대형화하려는 정부조치가 결과적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해주어 미성년자 근로문제의 소지를 키워준 경우도 있다. 1970년에는 정부가 저리용자를 해주어 미성년 근로자들을 훈련한 뒤 고용케 하는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까지 마련해 주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정부의 기업보조금 수혜혜택을 누리고 수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출보상금을 정부로부터

반환받기도 한다. 위의 유리공장의 경우, 1982~83 회계년도에 유리제품 수출이 1천9백만불에 이르렀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1백90만불이 수출보상금으로 유리제조업체에 환불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복지관도 문제이다. 인도에서의 빈부의 차이는 오랜 신분사회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14세까지 취학을 의무화하는 교육개혁론이 제기되었을 때, 신분사회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이러한 조치가 신분사회의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리라고 우려한 나머지 미성년자들이 보다 근원적이고 잠재력이 있는 작업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은연중 반대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공장에서 훈련을 받아 작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근로문제는 부모의 무지와 가난에서 비롯되는 면도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다섯 가정 중 한 가정이 미성년자의 근로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근로를 법으로 금하게 되면 곧바로 가계가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감독행위를 사업주들보다는 미성년자들의 부모가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인도에서의 미성년자의 근로는 근로자 전체의 임금수준을 낮게 만드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수행 능력은 학교교육과 병행되는 경우에는 생명력을 지니지만 학교교육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순노동은 그 일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 그 노동가치가 고임금과 비교되어 노동시장에서 배척을 받게 된다. 사업주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다음 지속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임금을 받는 경험자들을 내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이 미성년자의 근로는 미성년자 자신들의 미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성인들의 실업을 영속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7세 또는 8세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이 30세에서 35세에 이르면 실직하게 되어 자기 자녀들을 대신 일터에 내보내야만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3. 필리핀에서의 미성년자 근로

필리핀에서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부모의 감독 아래 미성년자가 일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주는 정부에 등록하고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강조되고 있으나, 사업등록을 하여 골치아픈 근로문제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내기보다는 등록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를 벗어나는 방법을 택하게 때문에 근로조건과 환경이 법규정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 공식적으로는 작업장이 존재도 않는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작업환경이 적법한가를 살피려는 정부 관계부서의 내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작업환경의 적법성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 및 환경을 점검하고 법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미성년 노동인력을 활용해서라도 경제발전을 이루어 보자는 정부의 의지와 사업주의 무지때문에 법위반사실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아키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미성년자 근로감독에 열의를 보일 것을 언명했으나, 그후 언명한 사실을 실천에 옮기는 데에 필요로 되는 예산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만 그의 언명은 미성년자 근로가 문제가 있으며 근로상황이 적법하게 감독·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예였을 뿐이다.

필리핀에서는 제3세계 국가들간의 경쟁에서 이

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값싼 노동력의 활용에 있다는 후진국적 경제발전 신조에 근거하여 미성년자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낮은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식은 값싼 노동력을 찾게 되고 그 결과로 미성년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작업시간이 주당 최대근로시간인 4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최저임금수준도 일당 2.75볼로 설정되어 있으나 미성년 근로자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 재봉공으로 일하는 15세된 한 소녀는 주당 90시간에서 110시간까지 작업장에서 숙식하면서 일하는데 시간당 13센트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미성년자 근로환경과 작업모습은 일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부족하기 짝이 없다. 재봉공을 예로 들어 보면, 바로 일하고 있는 재봉틀 옆에 쌓아놓은 형질조각 더미에서 잠을 잔다. 6시에 기상하여 통상 쌀밥과 육즙으로 아침식사를 한다. 그리고 나서 작업장인 마루를 치운다. 정확히 아침 7시가 되면 재봉일을 시작하여 정오에 2시간의 휴식시간을 한 차례 가진다. 그후 오후 7시경까지 작업을 계속한 뒤 1시간반의 저녁식사 시간이 끝나면 자정까지 재봉질을 계속한다. 때로는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작업할 때도 있다. 일감이 밀리는 12월에는 밤새워 작업하고 잠은 상황에 따라 새우잠으로 메꾼다. 작업중예 조는 것이 위험한 일인 줄을 알면서도 재봉질을 하면서 잠을 자고 꿈까지 꾸는 경우도 있다. 작업장에는 시계도 없어 새로운 작업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집이 가까이에 있어도 일주일에 오직 한 번 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봉일에 쓰는 실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실을 사서 쓰도록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값싼 노동력이 애써 제조한 상품의 최종 소비자와 근로의 수혜는 해외시장과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근로대와 상품판매 이익의 차이를 살펴 보면 필리핀에서의 미성년자 근로가 경제적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닐라에 있는 War Win's Style 공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4배 이익을 거두고 있다. 매 12개의 셔츠를 만들 때마다 재봉공에게는 75센트가 지불되나 사업주는 동 단위에 3불의 마진을 남기고 있다.

4. 타일랜드에서의 미성년자 근로

타일랜드에서의 미성년자 근로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 보면, 미성년자들은 12세까지는 꽃팔기, 신문배달, 음식점에서의 손님시중 등 어렵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으나,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공장일과 같은 어려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또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법정 최저임금은 일당 2.92불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으며 위반된 사례에 대한 보완적 장치도 미흡하다. 타일랜드 내무부의 보고에 의하면, 1985년에 법정 근로시간 제한을 넘어 미성년자들을 작업하게 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된 사업주는 오직 3명뿐이었다. 미성년자의 작업환경을 감독할 근로감독관도 충분하지 않다. 1982년에는 타일랜드내에 있는 40,951개의 작업장이 허가를 받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많은 작업장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수는 겨우 115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타일랜드 정부 일각에서는, “공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살펴 보았으나 미성년 근로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정

부의 이러한 해명과는 달리 1978년에 실시된 타일랜드 상공부의 조사에 의하면, 3천여개의 공장 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1978년 이후에는 이러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미성년자 고용과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를 알 수 없게 되었지만, 1980년대의 타일랜드의 경제부흥과 함께 미성년 근로자의 수가 더욱 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83년에 실시된 국립 조사통계사무소의 한 조사에 의하면 11세에서부터 15세까지의 미성년자 34만명이 비농업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일랜드에서의 미성년자들의 작업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스웨터를 만드는 작업장의 예를 들어 보자. 동북부 지역이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그 지역 시골 소녀들이 “전방공장”이라고 불리는 공장에 끌려 들어 주당 7일을 작업한다. 작업장에서는 대개의 경우 숙식을 제공한다. 숙식의 제공은 복지차원에서 고려되기 보다는 작업이 끝난 후에도 근로자들을 한 곳에 모아 통제하고 또 근로자들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열악한 작업환경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987년에는 방콕 인근에서 지갑을 만드는 한 전방공장에서 고인화성의 본드에 전류가 흐르는 예민한 전선이 늘어져 인화되어 16시간의 고된 작업이 끝난 후 잠자리에 든 13세에서 15세까지의 미성년 근로자들 19명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미성년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도 법정기준인 일당 미화 2.92불에 훨씬 못미친다. 위의 스웨터 공장의 경우 소년들은 시간당 미화 7센트 미만의 임금으로 주당 7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이 임금수준은 타일랜드의 최저임금의 1/5에 해당한다. 15세 작업자의 경우 월급이 20불 정도가 되며 오후 10시 이후까지 특근을 하는 경우 20센트

가 보너스로 주어진다. 최고의 월급수령자가 된 후에도 월급으로 70불 정도를 벌려면 하루 15시간 이상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

취업은 직업알선단체가 주관하며, 부모가 직접 이들과 접촉하여 1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가계에의 도움을 빙자하여 근로의 결과가 근로자인 미성년자에게 보다는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계약 후 일단 작업장에 들어서면 문이 잠기는 장소에서 합숙하며 노예노동을 감수해야 한다. 직업알선단체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허가를 얻어 직업알선을 하고 있는지만을 단속할 뿐이며 알선활동의 내용, 즉 어떠한 조건으로 노동이 알선되고 있는지는 처음부터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이들 직업알선단체에 대한 단속 내지 제도활동을 전개할 때 미성년자들이 앞으로 타일랜드 경제를 이끌어 나갈 인력의 중요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미성년자 근로법이 있다는 사실 정도를 주지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Ⅲ. 미성년자 근로문제의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1. 미성년자 근로상의 문제

이상 네 나라에 있어서의 미성년 근로자들의 고용 및 취업상의 문제를 지적해 보면, 대개의 경우 미성년자의 고용 및 취업과 관련하여 입법은 되어 있으나 법대로 지켜지지 않아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 이하로 열악하다는 점이다.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고 또 그 이유들을 정리해 본다.

미성년자 근로와 관련하여 법제도는 구비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내용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성년자 근로문제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근로연령 제한을 법적으로 설정하고는 있으나 설정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12세 내지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의 작업은 위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농장에서 5세 아동의 작업이 묵인되고 있는 형편이며 그 작업환경 또한 농작물에 투여된 농약에의 오염가능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위험한 일에 종사하여 산업재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범죄에의 노출 가능성이 큰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또 가계수입 조력 목적이 아닌 미성년자 본인의 사치 및 오락 비용을 조달할 목적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14세 이하 미성년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5세 내지 15세 연령층의 아동 5명 중 1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필리핀의 경우 15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근로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이 산업발전을 위한 필요인력이라는 인식이 팽미하고 있는 형편이다. 타일랜드에서도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의 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나 1983년에 실시된 타일랜드 정부의 조사는 11세에서 15세까지의 근로자가 34만명에 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잘 지켜지지 않는 두번째 문제는 작업시간이다. 인도에서는 하루 8시간 노동이 최대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시간 내지 17시간의 노동을 감수하는 사례도 있다. 필리핀의 경우에도 성인 근로자들도 주당 48시간 노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근로자가 주당 90시간 내지 110시간을 작업하는 사례도 있다. 타일랜드의 경우에서도 주당 48시간 즉, 하루 8시간의 노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근로자들이 하루에 16시간

까지 일하고 있는 공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개의 미성년자 근로문제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값싼 노동력을 국가 경제발전에 활용한다는 미명아래 가계요구의 충족에는 크게 부족하고 미흡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근로의 질이 문제이지 임금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근로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수준보다 낮은 일당을 지급하고 있다. 일당은 미화로 환산하여 1.25불이나 24센트 내지 40센트 밖에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필리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법정 일당은 미화 2.75불로 되어 있으나 시간당 13센트의 저임금으로 노동력이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타일랜드도 마찬가지로 법정 일당인 미화 2.92불의 1/5정도의 저임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

미성년자 근로는 작업환경의 열악함을 수반하고 있다. 갖추어지지 않은 작업환경은 질병 및 사고 뿐만 아니라 작업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농장에서는 악천후 속에서 농약에의 오염가능성을 무릅쓰고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작업을 돕거나, 중장비 운전 등의 위험한 작업에 미성년자들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인도의 유리공장은 작업시설 및 공정이 원시적 형태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안전시설 및 장치가 전혀 없고 근로자 자신이 안전에 유의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필리핀에서는 숙식겸용 공장이 존재한다. 타일랜드에서도 통제 및 작업집단 응집력 강화를 빙자하여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밀폐된 합숙형 공장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 근로는 근로 및 근로소득의 사회적 분배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미성년자

근로는 성인들의 실업을 영속화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수익 마진의 폭을 보다 넓게 가지려는 사업주들의 고용전략에 부응하여 성인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는 노동수혜가 왜곡되게 배분되고 있다. 근로대와 그 근로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의 판매이익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거나 이들 차액은 대부분 사업주에게 귀속되어 버린다. 타일랜드에서도 근로의 대가가 근로자인 미성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귀속되고 있다.

미성년자 근로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를 한 가지 지적하면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식과 그에 연루되는 근로관리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가난·부모의 무지와 무기력·사업주의 근로자 우대의식 결여·정부의 부패·산업화로의 강한 의지때문에 미성년자 근로문제가 경시되고 있으며, 미성년자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필리핀에서는 저임금구조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범국가 사회적 인식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미흡한 작업환경이나 조건도 경제발전의 기여라는 합리화 사고 속에 묻혀 버리고 있다. 타일랜드에서도 정부나 관리가 부패하여 감독기능이 미흡하고 그나마 근로감독관의 수가 태부족이다.

미성년자 근로는 생계유지를 위한 부모의 요구와 무지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미국 농장노동의 경우 교육도 중요하나 당장 생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논리나, 인도에서 부모들이 미성년자 근로 감독 활동을 방해하는 형태는 가난에 찌든 부모의 무지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더우기 타일랜드에서는 부모가 직접 나서서 직업알선단체와 계약을 하여 미성년자들의 근로를 착취하고 있다.

미성년자 근로는 정부의 근로감독 기능의 미비에서 그 개선의 가능성을 말살시키고 있다. 미국

의 경우 적법하다고는 하나 위험의 예방에 미흡하여 신문배달 등의 사고를 맞는 경우도 있다. 인도에서는 근로감독 기능의 수행 이전의 부패상이 극심해 근로자 권익 위주의 감독보다 사업주의 이익선 보호를 위한 감독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필리핀에서는 선거공약으로 언명한 뒤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고 있는 형편이다. 타일랜드에서는 감독관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며 그나마 감독의지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감독내용이 불충분하게 진행되는 형편이다.

미성년자 고용은 부분적으로는 사업주의 근로자 우대이익 결여에서 비롯되는 일이다. 인도에서는 사업주들이 취업도 교육에 비교될 수 있는 기능훈련 수단임을 강조하고 근원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근로자의 작업능력이 개발되는 것을 온연중 반대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사업주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 및 환경 조성을 법규정대로 하지 않고 있다.

2. 미성년자 근로문제의 해결방안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미성년자들의 근로는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국가 사회적으로 싼 노동력을 이용한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궁극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리라는 기대가 있는 한 미성년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잔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가족들 또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남아 있는 한 미성년자들의 취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미성년자들의 근로를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작업환경과 근로환경이 인간다움을 무시할 정도로 열악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미성년자 근로문제에 인간적인 이해와 배려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

에 공감하는 뜻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모색되고 있는 방안들을 정리해 본다. 우선 미국에서 미성년자 근로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관련조치들이 활용 또는 제안되었었는지 그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 이어 이러한 조치들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연계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영국의 경우와 함께 살펴 본다.

1) 미성년자 근로관련 조치의 변천

산업발전이 일찍부터 진행된 영국과 미국에서는 산업화과정에서 미성년자 고용 및 근로와 관련하여 작업환경·작업시간·최저근로연령 등 여러가지 면들이 문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근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우려가 표명되었고 그러한 우려 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 조치들이 있어 왔다. 중요한 것들을 연대순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398년 : 영국 의회는 12세 이전에 쟁기를 부리거나 짐수레를 미는 미성년 노동인력을 농장 근로자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중세 기에는 미성년자들의 근로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1730년 : 산업혁명과 더불어 영국에서는 미성년자 견습공을 잔인하게 부리거나 장시간의 노동에 투입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오전 4시에 시작하여 오후 11시까지 일하는 어느 한 작업장에서는 5명의 소녀들이 과로로 죽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1802년 : 영국의회는 목화공장에서 일하는 견습공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제한하였다.

1833년 : 영국의회는 9세 미만의 어린이를 고용하는 것을 금하는 공장법을 채택하였다.

1836년 : 미국 최초의 개혁법인 마사츄세츠법은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미성년자들이 연간 최소한 3개월은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다른 주에서는 미성년자들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채 7세에서부터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1837년 : 미국의 잡지에 소매치기의 생활을 강요받은 한 고아의 이야기인 Charles Dickens의 "Oliver Twist"가 연재되기 시작했다.

1840년 : 영국 왕립협회는 탄광에서 하루에 14시간 이상 작업을 하고 있는 6살짜리 어린이를 발견하였다.

1870년 : 영국의회는 만연되어 있는 미성년자 근로를 종식시키는 의무 전일제 학교법을 제정하였다.

1900년 : 미국의 센서스조사 결과 10세에서 15세까지의 어린이중 175만명이 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1902 ~ 1904년 : 알라바마주에서 시작된 시민단체의 압력이 미국 전역에 확산되어 16개 주가 미성년자 근로법을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1909년 : 전국 미성년자근로조사위원회가 비밀리에 입수한 사진이 계기가 되어 펜실베이니아주내에 있는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

1938년 : 수십년간의 논란을 벌려온 끝에 미국 하원은 16세를 농업분야를 제외한 모든 작업장에서 최저근로연령으로 규정하였다.

1982년 : 레이건 행정부는 최저근로연령을 약간 완화하여 14세에 이르는 미성년자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오후 9시까지 요리사·제과사·교환수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안하였으나 대중의 거센 반대로 철회되었다.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18세기 중반까지 미성년자들의 근로를 당연시해왔다. 그러

나 19세기 초반부터 미성년자 근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법제도들이 구비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미성년자의 근로를 종식시키는 학교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미국은 영국에서 미성년자근로법이 제정될 무렵에서야 미성년자들의 근로상황을 인식하고 이슈화하기 시작하여 금세기 초에 들어서야 관련법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르고 있다. 이들 두 나라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지만 미성년자 근로문제의 인식에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방편으로서 미성년자근로법을 만들기까지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 후 60년 내지 70년이 소요되고 있다.

2) 미성년자 근로문제의 해결방안

미성년자 근로문제는 특정한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 그 국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완벽한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 근로문제는 앞의 몇나라에서의 미성년자 근로실태 파악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들이 일한 결과가 그 국가·사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로 이동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엔 노동기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근로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그 해소 내지는 해결방안에 동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인지되고 있는 미성년자 근로문제의 해결 시각을 내국적 방안과 국가간 방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 내국적 방안에는 미성년자 근로법을 제정·공포하고 이를 엄중하게 집행하며 또 교육적으로는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대중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모색

될 수 있다. 국가간 방안으로는 국가간 교역조건에 미성년자 근로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고 무역보복 등 조치를 취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한 나라가 어떠한 방안을 선택하고 그 입장을 강조하고 있든지 간에 내국적 방안과 국제적 방안은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국적 방안은 경제면에 있어 보다 나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종국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경우 미성년자 근로를 허용 또는 묵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방안이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근로문제의 해결 또는 치유에 국제적인 공동노력 또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에 근거한 적절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 내국적 방안

첫째, 미성년자 근로법의 내용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그 법을 엄중하게 시행하면 형편없는 근로상황 아래 거의 묵인되다시피 실시되고 있는 미성년자 고용이 대폭 줄게 될 것이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미성년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연령을 공적 합의를 거쳐 입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로법이 제정되어 있을 때 그 법을 근거로 하여 고용주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고 여러 관련기구의 감독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이 상황에 따라서는 극히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러 나라들이 최저근로연령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어떤 수준이 가장 합리적인지 기준도 없다. 최저근로연령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미국

도 농장일에 12세 된 미성년자의 작업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을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유엔 국제노동기구가 정하고 있는 14세 이하 미성년자의 취업을 금하는 입법을 모든 나라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지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미성년자 자신들이 여러가지 동기로 인하여 취업을 원하고 있어 취업을 실질적으로 금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적어도 미성년자가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피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인간적인 것으로 개선하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난한 가정일수록 미성년자 취업에 근거한 가계수입을 필요로 하며 국가나 사회도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법으로 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이를 따라주지 않으면 문제해결에 법적 규제가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 근로문제를 완화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효과적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인도의 경우 미성년 노동자를 위한 복지를 의무화하고 있고, 터키에서는 미성년자가 취업을 하려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성년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성년자 근로문제의 심각성을 다른 국면에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성년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출이 증가되면 미성년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성년 근로자를 선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현실화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근로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고용기회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고 볼 때 성년 근로자들을 선호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미성년 근로자들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미성년자들의 근로를 금하면 1천 5백만명의 성년 근로자들의 취업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허용이 고용정책면에 다른 부패의 소지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미성년자 고용을 전제로 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게 되면 고용주에게 미성년자 고용을 실질적으로 허가해 주는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성년자 근로문제에 있어 당사자들인 미성년자들만이 피해자로서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은 너무 약자정의론에 치우치는 감도 있다. 그러므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도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노동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도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모로코와 타일랜드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이미 폭넓게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조치에는 벌을 가하기 보다는 근원적인 치유 차원에서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방법이 어떠하던 이러한 조치는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미성년자중 특히 연약한 어린아이의 근로를 막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어떠한 규제보다는 그 시행에 있어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에서 쫓겨난 미성년자가 다른 곳에서 또 돈벌이를 하려고 시도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그대로 남는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네째, 근로법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것을 시행에 옮기려는 관리 또는 감독체제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규정의 소유뿐만 아니라 선정된 최저근로연령을 확실하게 지켜 나가도록 감시하는 법 집행력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여, 미성년자 근로문제를 철폐하는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양심

적인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미성년자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들의 의무취학 연령을 높이고 그 사실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의무취학은 모든 나라에서 미성년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대중교육의 실현은 미성년자들을 학교에서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게 하여 미성년 노동인력을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근원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취학률이 100%라는 것은 모든 미성년자들이 작업장에서 보다는 학교에서 미래의 자기발전을 위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 시각을 실천에 옮기는 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2) 국가간 방안

미성년자 근로문제는 국가간에 제품 불교역운동을 전개하여 어느 정도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세계 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미성년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나라들과 교역을 금하도록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즉,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미성년자들을 대량으로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국가 수준에서의 미성년자 근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각이다. 이러한 방안은 미성년자 고용과 관련한 반윤리적 상황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 근로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쉽지 않으며, 이러한 해결 시각이 구체화될 경우 제3세계의 경제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제품 불교역운동으로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무역보호보다는 미성년 근로자 보호를 우선시하여 미성년자 근로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 내에 있는 백화점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남아프리카 흑인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강조되었던 “Sullivan원칙”과 비슷한 교역 부대조항들을 채택하여 미성년자 고용의지를 꺾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타일랜드로부터의 섬유류나 인도로부터의 유리제품을 해당국가가 미성년자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증하는 회사들로부터 수입하고 그 수입선을 끝까지 존중하자는 제안이 있기도 하였다.

다음의 방법으로는 교역조건에 노동조건을 삽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방안은 제품의 수입시 그 제품을 만드는 작업환경에 미성년자 근로문제를 교역 제한조건으로 내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을 통한 규제 또는 보복의 방법은 국내용 또는 내수용 제품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1984년에 입안되었던 미국의 Pease안은 교역조건에 “노동자 권리”조항을 삽입하여 114개 개발도상국의 상품이 통관의무를 거치지 않고 미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이러한 교역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교역국가들에게 “노동자 권리”조항에 최저근로연령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안은 교역을 통한 실제적인 목적달성에는 미흡하였다. 12세 이하 미성년의 고용을 입법화하지 못한 모로코로부터 4세 소녀가 짠 수공 양탄자 수입이 교역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최저근로연령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나라들과의 교역에서 경쟁을 할 때 “불공정 교역”의 예로 제소할 수 있는 국제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떠한 수준이 합리적인 최저근로연령 기준인가가 국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역상대국에서 어떤 연령수준으로든 최저근로연령을 규정하기만 하면 대항할 근거가 없다.

IV. 맺는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 근로문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볼 때 그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미성년자 근로와 관련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미성년자 근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인간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가 제안하고 있는 최저근로연령 기준보다 더 낮은 근로가능연령 기준을 합의에 의해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명백하게 지키는 한 미성년자 근로가 문제시될 리 없다. 또 중등학교에서의 취학율이 높은 경우 미성년자들이 공장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새삼 미성년자 근로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라면 다음에 예측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일 것이다. 우리의 경우 대다수의 미성년자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보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율은 아직 100%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소수의 미성년자들이 피치못할 이유로 해서 고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벗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학교를 중단하고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소수의 미성년자 집단이 아직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작업장에서 미성년 노동력을 악용하는 사례도 문제시 될 수 있다. 주7일을 하루 15시간 이상 상할 수도

없이 적은 시간당 급료를 받으며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대다수의 사회 성원들이 어떤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으면 그 심각성이 의외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사회성원들 중 소수가 다른 사회성원들과 질적으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심각성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소수의 사회성원들이 느끼게 되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크게 마련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근로문제의 심각성은 미성년자 근로가 여러가지 면에서 범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공식적인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하도록 건전한 노동시장의 풍토 속에 포장된 채로 존속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들을 특별한 작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인신매매 등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방법이 때로 동원되고 있고 그에 따라 범법행위가 가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조사와 조치가 행해졌다는 얘기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